

운영 규정 개요

2022.12.

효심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이용계약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계약서류

계약당사자는 이용계약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 ②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2021.6.30.자로 변경)
- ③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④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1부
- ⑤ 급여제공계획서 1부등

3.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및 계약일자를 시작 으로 한 인정 유효기간 등으로 한다.
- 2) 계약기간중 급성기 입원.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 3) 계약기간의 종료시 또는 종료후에도 재계약할 수 있다.

4.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 하여 수급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5.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액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금에따라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건강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공단부담금 85%, 개인부담금 15%
		9%,6%	의료급여,감경대상자 (2018.8월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
		0%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매월말 익월 전원본인부담액 문자발송 기관통장으로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현금수령을 지양한다.

가.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계약해제등

신원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 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권리 및 의무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수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시(가정) 또는 효심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서비스 대상자의 거주지와 건강과 일상생활상태에 대해 확인과 알 권리
- ② 서비스제공내역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과 알 권리
- ③ 서비스 제공계약에 대한 서비스이용을 주장할 권리
- ④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가산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전 건강과 질병상태,가족환경등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제공하여야 하며 미제공으로 인한 사고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전적인 책임이있다
단,담당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서비스가 건강상의 안전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수 있다.
방문요양업무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않으며 이용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게 묻지않는다. 또한 방문요양의 목욕도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수급자(보호자)의 일방적인 요구로 서비스중 불미스런 사고발생시 기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는다.
-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하여야하고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한다.
-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변화사 고지할 의무(해외이주,금치산 또는 파산선고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시),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시 본 기관의 요청에따라 서비스내용변화에 동의해야한다.
- ④ 계약기간중 천재지변이아 수급자의 불가항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시설립소,타지역 이사로 거주지변동,병원입원,해외출국)가 아닌 한.,계약기간 동안 타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4) 기관의 수급자 관리의무

-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입원시는 급여성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연락하였으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 제외)
- ③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한다)
- ⑤ 수급자 이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미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5) 계약의 해지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민.현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시는 계약기간중이라고 계약을 취소할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단,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② 수급자(보호자)가 종사자에게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사건발생시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때,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본인부담금을 3회이상 연체하여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⑤ 이용계약에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자(보호자)가 따르지않고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이 있고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⑥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⑦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이용기관에 종결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 ⑧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내용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